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4
----------	---

제출년월일 : 2002. 7. 15.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 사유

- 옥외광고물등관리법(2001. 7. 24) 및 동법 시행령 (2001. 11. 22),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2002. 4. 24)등의 개정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각종 사항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종전 광고물 관리 업무가 시장 권한으로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사무 위임되어 처리 하던것을 동 법령에서 광고물 허가 사항 권한등을 일선 구·군에 이양됨에 따라 시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대부분 위임 받아 새로이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경관의 향상 및 시민 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함

2. 주요 골자

- 사하구광고물관리 심의 위원회(소위원회)를 두어 일정 규정 이상의 광고물 및 특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시 사전 구 광고물관리 심의 위원회의 심의토록 규정 (구조례안제3조 및 제4조)
-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출석 위원 수당 과 여비 (구조례안제5조)
- 광고물 안전도 검사 업무 위탁 (구조례안제6조 ~ 제8조)
-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 (구조례안 제9조)
-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구조례안제11조~제13조)
- 허가 또는 신고시 수수료 (구조례안제14조)
-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 (구조례안제15조)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 (구조례안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부산시조례

나. 예산 조치 : 별도 예산 조치 없음

다. 합 의 : 별도 합의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자치부 표준안(행자부13760-1434(2001. 12. 13) 및 시자치13060-20569(2002.3.15)호

(2) 규제 심사 : 규제신설, 폐지 등 없음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사하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 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및 디자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사하구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의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2.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이므로써 전자식 발광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전
2.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전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기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제7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구청장은 영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이상의 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구청장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⑦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에 검사내용, 결과 등을 기재하여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안전도검사대장에 등재하고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게시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의 제거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 시간 등은 별표1과 같다.

② 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실시 방법·수강절차·비용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3.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3조(교육의 위탁) 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 실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자는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다만,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 또는 설치된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표시 또는 설치기간의 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 (제12조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업신고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업자 (대표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
기타교육	별도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 14조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향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관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 1,5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5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 약국 표지등	20,000 1,000 5,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 가로형간판 가향과 같음 ·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50,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20,000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나. 전주·가로등주	개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5,000 2,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13,000 15,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대		400,000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대		10,000
나. 차량 양측면	대		2,000
11. 선전탑	개		5,000
12. 아취광고물	개		5,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5,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개		10,000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0 2,000
15. 벽 보	매	• 50매당	5,0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5,000
17. 광고물등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자치구
1. 시내·시외·전세버스 외부광고		대		2,000
2.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대		1,500
3. 영업용 택시광고		대		1,000
4.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5.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6. 축구조형물광고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0 2,000
7. 홍보탑광고		개		20,000
8. 벽면이용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0 2,000
9. 깃발이용광고		개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5,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 적용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3】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14조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1,000 38,000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 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1,6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공연간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6제곱미터 미만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 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공연간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 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문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의 옥상간판에 준함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게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 30제곱미터 초과 4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1,000 6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 1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 (1) 관할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2)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 15조제 1항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 연면적 0.5제곱미터미만	· 8만원
· 연면적 0.5제곱미터이상 0.8제곱미터미만	· 13만원
· 연면적 0.8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 19만원
·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1.3제곱미터미만	· 25만원
· 연면적 1.3제곱미터이상 1.6제곱미터미만	· 30만원
· 연면적 1.6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 39만원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2.3제곱미터미만	· 45만원
· 연면적 2.3제곱미터이상 2.6제곱미터미만	· 60만원
· 연면적 2.6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 79만원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 79만원+3.0제곱미터
	초과면적 0.5제곱미
	터당 10만원 가산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 연면적 0.5제곱미터미만	· 5만원
· 연면적 0.5제곱미터이상 0.8제곱미터미만	· 7만원
· 연면적 0.8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 9만원
·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1.3제곱미터미만	· 15만원
· 연면적 1.3제곱미터이상 1.6제곱미터미만	· 20만원
· 연면적 1.6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 29만원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2.3제곱미터미만	· 35만원
· 연면적 2.3제곱미터이상 2.6제곱미터미만	· 40만원
· 연면적 2.6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 49만원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 49만원+3.0제곱미터
	초과면적 0.5제곱미
	터당 5만원 가산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p>나. 현수막</p> <p>(1) 표시면적에 따른 부과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1.0제곱미터미만 · 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 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 면적 3.0제곱미터이상 3.7제곱미터미만 · 면적 3.7제곱미터이상 4.4제곱미터미만 · 면적 4.4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 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 면적 6.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 면적 8.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 면적 10.0제곱미터이상 <p>(2) (1)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만원 · 7만원 · 9만원 · 13만원 · 15만원 · 19만원 · 25만원 · 35만원 · 45만원 · 45만원+1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배 적용
<p>다. 벽보</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장 · 11~20장 · 21장이상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장 · 11~20장 · 21장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당 1만원 · 장당 1만5천원 · 장당 2만5천원 · 장당 1만5천원 · 장당 2만원 · 장당 3만원
<p>라. 전단</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장 · 11~20장 · 21장이상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장 · 11~20장 · 21장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당 5천원 · 장당 1만원 · 장당 1만5천원 · 장당 1만5천원 · 장당 2만원 · 장당 3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마. 기타 유형의 광고물	· 입간판에 준함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 25만원
나. 연 2회 위반자	· 45만원
다. 연 3회이상 위반자	·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 16조제 1항관련)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금액
1. 가로형간판·벽면이용 공면간판(건물 4층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판류형간판 제외), 세로형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2.0제곱미터미만 · 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 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 면적 4.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 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 면적 6.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 면적 7.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 면적 8.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미만 · 면적 9.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 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2.0제곱미터미만 · 면적 12.0제곱미터이상 14.0제곱미터미만 · 면적 14.0제곱미터이상 16.0제곱미터미만 · 면적 16.0제곱미터이상 18.0제곱미터미만 · 면적 18.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45만원 · 55만원 · 65만원 · 75만원 · 85만원 · 95만원 · 110만원 · 130만원 · 145만원 · 165만원 · 185만원 · 195만원+20.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2. 돌출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2.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6.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8.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9.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49만원 · 55만원 · 65만원 · 75만원 · 85만원 · 95만원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2.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2.0제곱미터이상 14.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4.0제곱미터이상 16.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6.0제곱미터이상 18.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8.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만원 · 130만원 · 150만원 · 170만원 · 190만원 · 195만원+20.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p>3. 지주이용간판, 지주이용 공연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0.5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0.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3.5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 4.5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4.5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6.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8.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9.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만원 · 35만원 · 40만원 · 48만원 · 55만원 · 65만원 · 80만원 · 95만원 · 110만원 · 130만원 · 150만원 · 170만원 · 190만원 · 195만원+10.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p>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판류형 가로형·공연간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2.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6.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만원 · 35만원 · 40만원 · 48만원 · 55만원 · 65만원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7.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8.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9.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2.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2.0제곱미터이상 14.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4.0제곱미터이상 16.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6.0제곱미터이상 18.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8.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2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2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3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35.0제곱미터이상 40.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 4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45.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만원 · 85만원 · 95만원 · 110만원 · 130만원 · 150만원 · 170만원 · 190만원 · 210만원 · 230만원 · 245만원 · 260만원 · 280만원 · 290만원 · 295만원+50.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p>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p> <p>가. 선전탑·아취광고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5.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p>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70만원 · 70만원+20.0제곱미터초과 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 (100만원이하)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3개초과 1개당 5만원 가산(100만원이하)
<p>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p> <p>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만원 · 50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5.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p>나. 교통안내소</p> <p>다. 안내게시판 · 지정벽보판 · 버스승강장 · 택시승강장 · 관광안내도</p> <p>라.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인정한 공공시설물.</p> <p>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공시설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5.0제곱미터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만원 · 70만원 · 80만원+20.0제곱미터초과 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 (100만원이하) · 일반 가로형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25만원 · 30만원 · 35만원 · 36만원+15.0제곱미터초과 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 (50만원미만)
<p>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p>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p> <p>가. 비행선</p> <p>(1) 무인비행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p>(2) 유인비행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p>나. 그밖의 교통수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만원 · 150만원+10.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500만원이하) · 200만원 · 200만원+10.0제곱미터 초과 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500만원이하) · 10만원 · 20만원 · 29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만원 · 45만원 · 49만원+5.0제곱미터초과 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 가로형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
는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
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
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⑮ 비고	
	②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업소명	⑤ 전화번호	⑥ 주소	⑦ 옥외광고업신고번호	⑧ 종류	⑨ 수량	⑩ 규격	⑪ 표시위치	⑫ 표시기간	⑬ 광고내용	⑭ 준공일자	⑮ 성명	⑯ 주소	⑰ 전화번호		⑱ 변경사항

364mm × 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지정서

수 탁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 체 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0조 및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4호서식】

- 규 격 : 가로 6cm × 세로 8cm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부산광역시 사하구

후 면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20 ~ 20)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옥 외 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서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 검 사 구 분	신규·갱신·변경
⑦ 광고물등 허가 일자 및 번호			⑧ 광 고 물 등 의 류 종	
⑨ 표시위치 또는 장 소			⑩ 광 고 물 등 의 격 규	
⑪ 신 청 일 자			⑫ 검 사 일 자	
⑬ 검 내 사 용				
⑭ 검 의 사 건				
⑮ 안 전 도		합 격, 불 합 격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9조 및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성명 :

직위(직명) :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뒷면>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비 고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 (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사용 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 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 부위	기초 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 (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 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 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 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에자, 연결부위 등 각종자재의 상태		
	안정기, 과전류 및 누전차단기,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장애		
기타	기타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 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천재지변, 인위적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폭우·폭설후, 폭발·충격 후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대장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물 등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 물등 의 규격	⑩ 검사 일자	⑪ 검사 구분	⑫ 검사 결과	검사자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처리기간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3 일	
신 청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 신 고 번 호
⑦ 재교부 신청 사유			
<p>부산광역시 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 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수수료필증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수료일자		
수 강 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이수대장

① 연 번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호	⑦ 비 고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60g/m²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

신고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 영업장소재지	
	⑤ 주 소			
교육계획	⑥ 일 시			
	⑦ 장 소			
⑧ 불 참 사유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 청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 체 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구비서류 : 신청인(기관·단체)의 소개서 (보유시설·장비·인력등 포함)		수 수 료 없 음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수 탁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